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통 신 – 특기 시방서]

2026. 07.

목 차

01 BF인증관련 특기사항

01 BF 인증 관련 특기사항

■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대상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BF 인증기준, 설계도서 및 BF 예비인증 심사결과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와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하며, 상호 불일치, 누락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종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BF 인증 관련 사항은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간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BF 인증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BF 인증 관련 시설을 설계도서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출입문 및 복도 등의유효폭
- 단차 및 경사로
- 계단 및 손잡이
- 승강기
- 장애인이용 가능학장실
-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 안내시설 및 촉지도
- 객실•관람석•접수대 등 해당 시설별 편의시설
- 그 밖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 제품, 규격, 설치위치 및 시공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BF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예비 인증 사항의 확인

가. BF 예비인증서, 예비인증 심사결과서 및 보완사항은 본 공사의 시공 시 준수하여야 할 자료로 활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인증 심사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 중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예비인증 내용과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마감 또는 은폐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입구 유효폭, 경사도. 단차, 손잡이 높이, 점자블록 위치, 장애인화장실 내부 유효공간 등 완공 후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시공 전에 현장 실측 및 관련 공종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BF 인증과 관련한 주요시공사항은 본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중 •후 사진 및 측정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BF 본인증 업무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본인증 신청에 필요한 시공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요 시설물의 치수 및 설치상태 확인
- 공사사진 및 시공확인자료 제출
- 인증기관의 현장심사 및 현장확인 협조
- 인증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그 밖에 BF 본인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 현장심사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숙지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 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득절차를 준공 후라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6. 보완사항 및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승인받지 않은 자재•제품•시공방법의 변 경 또는 시공품질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F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필요한 보환 및 재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 또는 BF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설 또는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한 후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독자 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BF 인증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 에비인증 심사결과 및 BF 인증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F 관련 시설자체점검표
- 주요 시설별현황사진
- 유효폭•높이•경사도 등 주요 치수 측정자료
- BF 예비 인증보완사항조치결과
- 본인증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
-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8. 기타

본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